

국가보훈부 공고 제2023-156호

2024년도 국가유공자 등 주택 우선 공급 계획 공고

2024년도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 우선 공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.12.1.

국가보훈부장관

주택 우선 공급

1. 신청 대상자 : 독립유공자와 그 수권유족, 국가유공자와 그 수권유족, 5·18민주유공자와 그 수권유족,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,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수권유족 (배우자에 한함), 참전유공자 본인, 영주귀국독립유공자 유족(세대주),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 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,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·공무원 또는 그 수권유족
2. 신청 장소 :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(지)청
3. 신청 기간 : '24. 1. 2.(화)~1. 12.(금) (09:00 ~ 18:00) * 토요일과 일요일은 제외
4. 주택 규모 : 전용면적 85㎡ 이하(분양 및 임대)
5. 신청 조건
 - 신청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함)
 - ※ 주택소유 여부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기준은 「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기준」에서 정함
 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에 저촉되지 않는 사람
 - ※ 특별공급(분양 또는 분양전환공공임대)을 한차례라도 받은 사람은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5조에 의하여 아파트 분양·분양전환공공임대 지원 대상에서 제외
 - 영구임대주택은 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」 제14조에 해당되는 사람
 - 국민임대주택은 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」 제15조에 해당되는 사람
 -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」 제19조에 해당되는 사람
 -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은 「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」 제9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
 -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「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」 제7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
 - 통합공공임대주택은 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」 제17조의2에 해당되는 사람
6. 구비서류
 -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, 추천 서약서(접수장소에 비치) 각 1통
 - ※ 개인정보제공동의 확인을 위해 본인, 배우자 및 세대원 도장 필요(신분증 지참 방문자에 한해 서명 가능)
 -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) 1통
 -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, 건축물대장 등으로 무주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무주택 입증서류 1통 (해당자만 제출)
 - 분양 신청자 중 소형·저가주택 소유자는 '개별주택가격확인서 또는 공동주택가격확인서' 1통
 - ※ 정부24, 구(군)청 또는 주민센터 민원실 발급 가능

7. 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 선정방법

- 무주택기간, 희생 및 공헌도, 기지원 여부, 전년도 미지원 여부 등 배점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부를 작성한 후 국가유공자 우선공급 물량이 확보되면 희망여부를 파악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추천
- 우선순위는 「주택 우선순위 배점기준표」에 따른 배점 후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결정
 - ※ 「주택 우선순위 배점기준표」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(예우보상-지원안내-대부지원)에서 확인 가능
- 2024년도 신청에 따른 우선순위는 다음 해 우선순위부 확정 전까지 적용하며, 2024년도 우선순위부가 확정되기 전에 공급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2023년도 우선순위에 따라 추천
 - ※ 2024년도 주택 우선 공급 정기신청 이후 우선순위부 확정 시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

8. 기타 안내사항

- 전년도 신청자 중 알선받지 못한 분은 재신청할 필요 없음
- 분양 → 임대, 임대 → 분양으로 변경 희망 시에는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로 정기접수기한 내에 변경 신청
- 아파트 분양과 임대를 이종으로 신청할 수 없음
- 임대아파트 등 특별공급 지원(동·호수 당첨자 발표)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분은 신청 불가
 - ※ 단, 특별공급으로 분양(분양전환공공임대 포함) 알선 받은 분은 분양으로 재신청 불가
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3조 제9호에 따라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·저가주택(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가격이 1억원(수도권은 1억6천만원)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)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무주택으로 인정(분양신청자에 한함)
 - ※ 동 사항은 「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기준」 고시 개정 후 적용하되, 해당자는 2024년 정기접수 기간부터 신청 가능
- 「재외국민등록법」 적용대상자는 주택 우선 공급 지원 제외
 - ※ 「해외이주법」 제12조(영주귀국의 신고)에 따라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가능
- 「주택법」 제64조제1항의 전매행위기간 위반 또는 「주택법」 제65조제1항의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한 경우에는 주택 우선 공급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
- 주택 우선 공급 신청인의 주택소유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인과 세대원의 개인정보(고유식별정보)를 해당기관에 제공하는 것이 필수이므로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 제출 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
- 주택 우선 공급을 지원받을 경우 아파트분양 또는 주택임차 등의 대부가 가능함
 - ※ 단, 참전유공자 및 2024년도 보훈업무시행지침에서 정한 대부지원 제외자는 대부지원 불가하고, 나라사랑대출 중 분양대부 또는 주택구입(신축)대부를 받을 경우 추후 주택 우선순위 배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
- 나라사랑대출을 통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만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29조에 의하여 취득세 감면 - 전용면적 85㎡ 이하: 취득금액에 대하여 면제 / 85㎡ 초과: 대부금액에 대하여 면제
-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되며, 이를 위반시 「주택법」 제64조, 제65조, 제101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
- 접수 후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관할 보훈관서에 전화 신고

9. 참고사항

- 무주택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주거 안정이라는 제도의 지원 취지와 목적에 보다 부합할 수 있도록 「주택 우선순위 배점기준표」의 개편(변경)을 진행 중에 있으며, 개편되는 「주택 우선순위 배점기준표」는 2026년도부터 적용될 예정임
- 지역별 대기자 및 물량에 따라 추천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※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나 또는 국가보훈부(1577-0606)로 문의바랍니다.